#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349 발의연월일: 2023. 4. 13.

발 의 자:한준호·김용민·양경숙

유정주 • 한정애 • 이상헌

박상혁 • 정일영 • 김병기

최종윤 • 안규백 • 윤영찬

김홍걸 · 황운하 · 장철민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가해학생에게 전학 또는 퇴학처분과 학교에서의 봉사 등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치가 함께 부과될 경우, 교내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또는 퇴학 처리가 지연되어 피해학생의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가해학생이 부과된 조치에 대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해당 사건의 관련 당사자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 보호자와 해당학교 측이 불복절차 진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함께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쟁송의 결과 등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7항 신설).

#### 법률 제 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는 제3호의 조치와 동시에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행정심판)"을 "(행정심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육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청구된 사실과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7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 자가 제17조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와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 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 -----포함한다. 다 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 만,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는 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제3호의 조치와 동시에 부과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 아니한다-----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 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② (생략) ② ~ <sup>(1)</sup>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 ③ 제17조의2(행정심판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교육장은 제17조제1항에 따 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피해학 생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청구된 사실과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